Epi MOCVD System 공동개발 후속사업 공동협력 계약서

2002년 2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314에 본사를 둔 삼성전기 주식회사 (이하 '甲')와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 128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아펙스(이하 '乙')는 다음과 같이 계약하다.

배경설명부

乙이 제조, 甲에 공급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AlGaAs Epi MOCVD장비는 甲과 乙이 각각 보유한 Epi 공정기술, 장비운영기술과 MOCVD장비 제조기술을 투입하여 공동개발된 결과물이다.

이 공동개발의 정신에 입각하여 甲은 이 공동개발 결과물과 동일한 사양의 추가 장비소요가 있을 경우 乙로부터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장비를 공급받기를 희망하며,

장비제조회사인 乙은 甲의 추가 장비소요가 있을 경우 우선공급업체가 되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향후 甲 외의 제삼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공동개발 결과물과 유사한 사양과 목적의 장비 판매 영업을 함에 있어 甲의 협력을 희망한다.

甲은 乙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공동개발과 공동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협력을 제공하고 乙은 乙이 성취하는 제삼자 대상 영업결과를 바탕으로 甲이 제공한 협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희망한다.

위 취지를 감안하여 甲과 乙은 다음 계약조건에 합의한다.

계약조건부

제1조 계약의 목적

- ① 甲이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乙로부터 공급받는 Epi MOCVD 장비에 대한 공급가액기준을 결정하고, 甲의 일부 기술정보 활용 등 甲이 乙에게 허용하는 활동과 그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 ② 그리고, 乙이 제삼자 대상의 Epi MOCVD장비 영업을 위한 공동협력을 함에 있어 甲과 乙 각자의 역할,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정의

① '기술지원' 이라 함은 甲이 乙의 요청에 의해, 乙에게 제공하는, 乙의 Epi MOCVD장비 영업에 필요한 제반 판매노력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지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GaAs Mobility 측정용 샘플 데모, 두께제어와 조성제어 평가목적의 AlGaAs/GaInP/AlGaInP 각각의 Single Layer 성장 데모, 장비가 성장가능한

최소두께 확인용 MQW 성장(100/80/60/40/20Å) 데모, 제반 데모 등에 필요한 Utilities와 측정장비의 사용 허용, 외부 샘플의 반입 허용, 데모 등을 위해 필요한 인원의 甲 시설 내 출입과 乙이 공급한 Epi MOCVD 장비의 사용 허용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甲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나 필요할 경우 甲은 甲이 인정하는 乙의 엔지니어에 한해 입회하거나 甲의 수행을 보조,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라 그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甲이 제공할 수 있는 제반 기술자료와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 ②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라 함은 전 항의 기술지원 중에서도 특히 乙의 제삼자 대상의 영업 목적을 위한 데모가 이루어지고 그 기술지원의 결과 해당 제살자에게 동일 사양의 한 대 또는 여러 대의 해당 장비의 판매가 이루어진 장비를 말한다.
- ③ '기술료'라 함은 乙의 영업활동을 위해 甲이 직접적으로 제공한 기술지원이 수반되어 제삼자에 장비의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乙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그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 (4) '비밀정보'이라 함은 공동개발 과정이나 향후 공동협력 과정에서 습득하였거나 습득할 수 있는 Device 구조, Device 생산방법 및 구조, 장비의 제조 도면과 문서, 기술지원 목적과 내용 등 제삼자에게 노출될 경우 비밀정보의 소유자에게 사업과 영업활동에 유무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정보와 영업정보를 말한다. 말하며 특히 조이 습득하였거나 습득할 수 있는 甲 생산 제품 판령 Layer구조, Layer품질, 조성 Spec. 등 甲의 생산제품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甲에의 Epi MOCVD 장비 공급가액 결정 기준, 지급조건

- ① 甲과 乙은 본 계약기간 동안 이 [기납품된 장비와 동일사양의] Epi MOCVD장비를 甲에게 공급하게 될 경우 그 공급가액은 대당 미화 \$750,000로 하기로 한다. 단, 甲과 乙 공히 환율변동 리스크 반감을 위해 이 금액은 미화 \$300,000과 원화 591,750,000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전 항에 불구하고 실제 공급계약가액은 전 항의 미화금액 \$300,000을 공급계약일 2은행영업일 전의 원달러 매매기준율로 곱한 원화금액과 원화 <u>591,750,000</u>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기로 한다.
- ③ 공급가액의 대금 지급조건은 계약 후 30%, 장비의 입고 후 60%, 장비의 Acceptance Test 후 10%로 하고 결제조건은 甲의 표준 결제조건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 공동개발 기술자료 활용 등 乙에게 허용되는 활동과 그 범위

① Z은 Z이 제작, 공급하고자 하는 장비의 사양과 성능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부분, 의 환하여, 그리고 장비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대상에 한하여 甲과의 공동개발과정에서 습득한, 또는 공동협력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기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乙은 본 계약에 따라 甲과의 공동협력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구체적이고 대외비적인 내용이 아닌 한 대외에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乙은 공개나 홍보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문안 내용을 사전에 甲에게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甲의 기술지원

- ① 甲이 乙에게 제공하는 기술지원의 범위는 제2조 1항에서 정한 내용과 범위에 한한다.
- ② 甲은 乙이 요청할 경우 甲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乙이 甲의 장비가동시간 기준 매월 3일을 초과하여 Wafer Demo 등 甲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甲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 실시 3일 전까지 구체적인 기술지원 요청 내용을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본 조 전 항 들에 불구하고 乙은 기술지원에 따라 발생가능한 甲의 생산활동에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甲과 충분히 협의하고 甲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제6조 기술료

- ① 乙은 甲에게 제5조의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기술료는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 총 15대까지는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 대당 83,330,000원으로 하고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 총 16대부터는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 총 16대부터는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 대당 20,000,000원으로 한다. 본 제약의 계약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종료 후 판매된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 총 15대자자계 한해 작용하기로 한다.
- ③ 乙의 甲에 대한 기술료의 지급조건과 결제조건은 해당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에 관해 乙과 제삼자 간에 체결되는 공급계약 상의 조건과 동일하거나 甲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④ 乙은 제삼자와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즉시 전 항의 지급조건, 결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약서 사본과 요약 내용을 준비,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약기간 종료 이전에 15대의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의 반맥가 이루어졌고 그 후 기술로 수입이 없더라도 따운 Z에게 잔여 제약기간 동안 제5조의 기술지원을 계속 제공책와 한다.

제7조 비밀정보 유지 및 유용금지

- ⑥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공동개발과정이나 공동협력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다른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1. 제 삼자로부터 비밀유지의 의무없이 적법하게 입수한 정보.
 - 2. 다른 당사자에 의해 비밀정보라고 명시되기 이전에 공지된 비밀정보.
 - 3. 다른 당사자에 의해 비밀정보라고 명시된 후에라도 각 당사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비밀정보.
 - 4. 기술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된 영업비밀.
- ⑦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비밀 유지를 위해 최소한 각 당사자 자체의 비밀 유지에 기울이는 주의와 조치의 수준 이상을 기울여야 한다.
- 8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 삼자에 무단 제공할 수 없다.
- ⑨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한 후 다른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서류 및 그 사본을 그 당사자에 신속하게 반환해야 한다.
- ⑩ 본 조에 규정된 비밀유지와 비밀유용금지 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2년간 존속한다.
- ① 특히 乙이 甲에 공급한 동일사양의 장비를 제삼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제삼자가 동 장비를 이용하여 부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되어 뿌이 영업상의 피해를 입제 될 경우 뿌운 그과 그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 귀책사유에 의한 뿌의 비밀정보 누출 여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제반 협조를 즈에 요구할 수 있으며 즈의 귀책사유에 의한 甲의 비밀정보 누출이라고 판명될 경우 뿌이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뿌 피해금액을 즈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즈은 뿌의 조사요구에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협조를 뿌에게 제공해야 하며 뿌이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뿌 피해금액을 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명시되어 그 유효기간을 달리 할 경우 해당 조항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제9조 기타 사항

①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

Draft (2002. 2. 21)

- ② 본 계약은 甲과 乙의 서명 날인한 서면계약에 의하여서만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 ③ 본 계약은 상대방의 서면동의없이 해지할 수 없다.
- ④ 본 계약은 본 계약일 전까지 甲과 乙 양당사자간에 교환된 모든 서면, 구두 기타 의사교환수단에 의한 합의내용 또는 제안내용에 우선한다.
- ⑤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등 해당 당사자가 통제불가능한 상황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 ⑥ 乙은 제8조의 유효기간 중에는 투의 서면동의없이 乙로부터 '기술지원 수반 판매장비'를 공급받은 제삼자와 해당 장비와 관련하여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만약 乙이 이를 위반하여 제삼자에 기술료를 지급할 경우 투운 동 기술료와 동일한 금액을 Ζ에게 청구할 수 있고 조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甲과 乙은 본 계약의 내용을 숙지, 이해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서평, 날인하고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甲'

삼성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형 도 'Z'

주식회사 아 펙 스 대표이사 김 갑 용